



부정청탁을 받거나, 목격했다면?

즉시 거절하고, 신고해 주세요!

01 거절하기

단호하게 거절하고, 청탁임을
명확히 알립니다.



02 신고하기

반복적인(동일한) 청탁 경우,
신고 창구를 통해 신고합니다.

*금품 등 수수의 경우 즉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 (불가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03 보호받기

신고자는 법과 제도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투명한 검토로 안전한 건축물,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신고 창구 안내



국토안전관리원 | 1588-8788
www.kalis.or.kr



청렴포털 | 1398
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신고자 보호제도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신분보장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변보호

필요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등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평가 및 개선이행 업무 관련

함께 지키는 청렴, 함께 만드는 안전

공정한 평가와 투명한 점검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더합니다.



원칙준수



공정한 평가



안전한 건축물



국토안전관리원



우리 기관은 이런 업무를 수행합니다

건축물관리점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여 부실점검 없는 안전한 건축물 관리체계를 만들어갑니다.



정기점검 보고서 평가

점검기관이 작성한 정기점검 보고서의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현장조사

부실점검 방지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개선이행 지원 컨설팅

미흡, 부정적 보고서가 적정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선명령 이행 확인 평가

보완된 보고서의 개선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성을 재평가합니다.

| 관련법령 |

-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 실시)
- 「건축물관리법」 제24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7조(예비평가의 실시 등)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7조(평가결과 보고 등)



이런 요청은 절대 안됩니다!

부정청탁은 법 위반이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01 등급상향요청



“평가 결과를 좋게 처리해 주세요”

02 지적사항 누락 요청



“이 부분은 평가하지 말아 주세요”

03 개선 없는 적정 처리 요청



“보완한 걸로 하고, 이번은 적정 처리해 주세요”

04 사적관계 이용 요청



“우리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주세요”



부당한 요청은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편의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식사, 주류,
다과 등 향응
및 현물



상품권,
현금, 사례금
등 금전



취업 등 기타
유·무형의
이익



교통, 숙박,
여가 등 편의
제공

업무관련 제공 사례(예시)



평가 전·후 금품 제공



평가담당자 식사 비용 결제



제3자를 통한 우회 제공



차량 및 숙박시설 무상 지원



정기점검 평가 및 개선이행 업무는 직무 관련성이 엄격히 적용되는 업무로, 어떠한 명목의 금품·향응·편의 수수 및 제공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